

의안번호	2216310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6E03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8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52억원(연평균 8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64억원(연평균 66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8억원(연평균 22억원)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수협 명칭사용·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21조의25제7·8항)	-88	-88	-88	-88	-352	-88
- 부가가치세(74.7%)	-66	-66	-66	-66	-264	-66
- 지방소비세(25.3%)	-22	-22	-22	-22	-88	-2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제7항 및 제8항	○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·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제7항 및 제8항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0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실적

-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제도는 수협중앙회 물적분할¹⁾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어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신설됨
 - (명칭사용용역) 수협중앙회는 경제·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목적에서 동 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명칭사용료 부과²⁾
 - (전산용역) 수협은행이 수협 조합 및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협

1)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던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국제결제은행(BIS)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(바젤 Ⅲ)을 기존 협동조합체제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바, 2016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.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, 동 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 자기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[법률 제14242호, 일부개정 2016. 5. 29., 시행 2016. 12. 1.] ‘제6장 제4절의2 수협은행’ 관련 조항 신설),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,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(동법 제167조 및 부칙 제8조 신설).

2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62조의2

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

-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69억원 실적을 기록하였고 2025년은 88억원으로 추정되며, 최근 5년간(2021~2025년)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

[표 2] 수협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 ¹⁾
부가가치세	50	61	72	69	88

주: 1) 정부 전망액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나. 추계 방법

- 동 제도의 최근 조세지출 수준(2025년 88억원)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
다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8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52억원(연평균 8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64억원(연평균 66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8억원(연평균 22억원) 감소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수협 명칭사용·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21조의25제7·8항)	-88	-88	-88	-88	-352	-88
- 부가가치세(74.7%)	-66	-66	-66	-66	-264	-66
- 지방소비세(25.3%)	-22	-22	-22	-22	-88	-22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